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00

2024년 9월 9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2일, 서상열 의원

2.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3. 상정일자 :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4년 9월 9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상열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학교장은 위 조례에서 규정한 5가지 학교시설 개방 예외 사유 외에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한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 측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교육감이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심혁보)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8월 12일 서상열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00호로 발의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시 학교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안전 확보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체육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의사결정이 학교장에게 있고, 학교장은

시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과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 등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도모하고자 연 100시간 이상 개방한 학교 중 누적 개방시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 지급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1] 개방 시간 구간별 인센티브 지원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개방 시간	학교수 (A)	학교별 지원금액 (B)	지원금액 총액 (A × B)
1구간	801시간 이상	58	32,000	1,856,000
2구간	601시간 이상 800시간 이하	46	26,000	1,196,000
3구간	401시간 이상 600시간 이하	54	20,000	1,080,000
4구간	201시간 이상 400시간 이하	107	17,400	1,861,800
5구간	100시간 이상 200시간 이하	89	14,800	1,317,200
계		354		7,311,000

○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7년 이후의 개방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시기(2020~2021)에 개방율이 급감하였다가 점차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23년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 구간인 100시간 이상을 개방한 학교 비율이 37.3%에 불과하여 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최근 5년간 학교 체육시설 개방실적[1)]

(단위: 천원)

구 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학교수(공립)	비율	학교수(공립)	비율	학교수(공사립)	비율	학교수(공사립)	비율	학교수(공사립)	비율	학교수(공사립)	비율
구간	전체	964		968		1,345		1,344		1,347		1,346	
	50시간 미만	56	5.8%	114	11.8%	191	14.2%	25	1.9%	152	11.3%	54	4.0%
	100시간 미만	25	2.6%	35	3.6%	50	3.7%	32	2.4%	54	4.0%	35	2.6%
	200시간 미만	110	11.4%	100	10.3%	69	5.1%	31	2.3%	97	7.2%	103	7.7%
	200시간 이상	517	53.6%	548	56.6%	79	5.9%	55	4.1%	331	24.6%	398	29.6%
개방률	미개방	256	26.6%	171	17.7%	956	71.1%	1,201	89.4%	713	52.9%	786	56.2%
	50시간 이상	652	67.6%	683	70.6%	198	14.7%	118	8.8%	482	35.8%	536	39.8%

○ **또한 학교체육시설을 개방 시 전문 관리 요원의 부족으로 체육시설 보안 및 관리의 어려움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스쿨매니저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 **스쿨매니저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2)]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이에 따라 스쿨매니저가 학교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스쿨매니저 사업은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치구 내 3개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내 서울시교**

1) 2023년(2022학년도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인센티브 지원 결과보고 (교육재정과, 2024.2.)

2)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개방의 원칙)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육청과 협약을 맺은 자치구는 10곳에 불과하여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각급학교, 자치구 등이 상호간의 소통을 통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감에게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추가적인 지원 사업이 필요한 바, 이를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간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 생각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개정조례안 제5조는 조의 제목을 ‘지원’에서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경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현행 제5조은 제1항과 제2항을 통해 각급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대상, 재정적 지원에 따른 예산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 제3항은 학교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의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조의 제목은 그 조에 규정할 주제를 분명히 밝히고 주제를 포괄하도록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원’을 ‘지원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안 제5조의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음으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은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의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이 강조되는 부분임으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

회의 주민편의를 높이면서도 학교 역시 발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바, 교육감에게 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3)]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3)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행정관리담당관-8989, 2024.8.21.)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